

**「진찰로 성희롱」 제하의 기사에서
실명보도를 인정, 언론사 측 승소**

- 일본 도쿄고등법원 판결 -

니이가타시(新潟市)의 여성으로부터 「진찰 중에 セクハラ(sexual harassment의 준말·이하 ‘성희롱’으로 함)를 당했다」는 부당제소를 받았다고 보도한데 이어 제소사실을 실명으로 보도한 마이니찌(毎日)신문의 기사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사이다마(埼玉) 의과대학의 교수가 마이니찌 신문사 등에 합계 2,7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고심에서 도쿄 고법 제14민사부는 지난 8월 31일 「제소된 사실은 프라이버시로 보호받아야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 마이니찌 측에 역전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교수 측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문제가 된 것은 『「진찰로 성희롱 행위」 사이다마 의과대학 교수 상대로 제소』라는 제목 아래 보도된 2000년 3월 7일자 조간기사로, 2005년 3월 14일 1심 도쿄 지법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하여 마이니찌 측에 110만 엔의 지불을 명했었다.

그러나 도쿄 고법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적 직업에 있는 자의 직업상 행위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사가 적시한 사실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원고의 이름은 행위의 주체를 특정하는 사안으로 프라이버시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교수 측은 9월 8일 상고했다.

(『신문협회보』, 2006년 9월 19일자) □

**미 연방지법, 취재원 증언을 명령
거부한 두 기자에게는 수감명령**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지난 8월 15일 취재원의 비닉(秘匿)을 이유로 취재원에 관한 증언을 거부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지의 기자 2명에 대해 증언을 명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어 9월 21일에는 증언을 거부한데 대해 법정모욕죄를 적용, 수감명령을 내렸다. 수감명령은 가결정으로 내려져 고법에서 결정이 있기까지는 수감되지 않는다.

이를 계기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방 차원에서 저널리스트의 취재원 비닉을 위한 증언거부권을 인정하는 Shield law(수비권법(守秘權法)·기자의 취재원 비닉권을 보장하는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취재원의 비닉에 대한 자세를 둘러싸고는 지방과 중앙 간에는 현격한 견해차가 나타나고 있다.

증언 명령을 받은 것은, 랜스 윌리엄과 마크 파이널 와다 두 기자로, 메이저리그 약물 의혹을 보도한 일련의 기사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스테로이드 사용에 관한 의회의 청문회, 약물테스트와 별칙의 강화를 유도했다.

두 기자는 약물사용을 심리하는 대배심에서 정보원(源)을 밝히도록 검찰로부터 요청받고, 그 취소를 지법에 제소했으나 각하되었다. 크로니클 지는 이 결정에 불만을 갖고 항소의 뜻을 밝혔는데, 두 기자는 끝까지 취재원을 비닉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상급재판소에서 똑같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두 기자는 법정모욕죄로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대배심에서 증언을 거부한 자이언츠의 베리 본즈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는 28일에 재수감 되었다. 또한 지난해 CIA 공작원명 누설사건과 관련하여 증언을 거부한 뉴욕 타임즈 지의 주디스 밀러 전 기자가 수감된 사건도 있다.

취재원 비닉이라는 보도의 기본윤리를 지키다가 수감되는 사태가 계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크로니클 지, 콘트라코스터 타임즈 지 등 각 지는 저널리스트의 취재원 비닉권을 보장하는 연방 차원의 Shield law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사설과 기사를 계속 게재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 8월 21일 76명 의원 만장일치로, 연방의회에서의 Shield law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안자인 에반스 의원은 “프레스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기초이며, 연방 차원에서 Shield law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위험하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미국의 포인터 연구소에 의하면, 미국 전체 중 32개주와 워싱턴에서 Shield law 혹은 이와 유사한 법률이 제정되어 기자의 정보원 비닉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의 Shield law는 보도기관의 정보원 보호권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한편 연방의회에서의 Shield law 제정 움직임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18일 초당파에 의해 새로운 Shield law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미 신문협회(NAA)를 위시하여 각 보도단체가 동법안의 지지를 표명했으며, 제정에 탄력을 불어넣으려고 했다.

그러나 부시 정권은 국가 기밀 누설에 대한 중대한 불안을 표명, 누설자의 조사와 엄중한 처분을 들고 나왔다. 한편 하원 본 회의는 지난 6월 29일 정부의 비밀정보활동 폭로를 비난하는 결의안

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이러한 현 상황들이 의회에서의 Shield law 제정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문협회보』, 2006년 9월 5일자)



「취재원 비닉 위해 증언 거절할 수 있다」

- 일본 최고재판소와 도쿄 고등법원 판결 -

미국의 건강식품회사가 미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촉탁증인신문에서 요미우리(讀賣) 신문 기자가 취재원에 관한 증언을 거절한데 대한 당부(當否)를 가리는 재판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지난 10월 17일 식품회사 측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증언거절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고법의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3일 동 법정은 NHK 기자에 대해서도 “취재원은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기자의 증언거절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 요미우리신문 기자의 경우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또한 같은 날 도쿄 고법에서도 교도(共同) 통신 기자에 대해 증언 거절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최고재판소의 결정은 취재원의 비닉이 인정되는 기준을 명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고재판소는 17일의 결정에서 “요미우리 신문 기자의 증언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도쿄 고법의 판단을 시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난 6월의 도쿄 고법 결정은 기자가 증언을 거부한 21개 질문항목 모두에 대해 거절을 인정했으며, 그 중에는 소속 조직·인원수 등 간접적으로 취재원의 정보를 묻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10월 3일의 NHK 기자에 대한 최고재판

소의 결정요지이다.

〈취재원 비밀·최고재판소 결정요지〉

『민사소송법은 공정한 민사재판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누구나 증인으로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증언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197조 1항 3호는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문을 받을 경우」,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업의 비밀」이란 그 사항이 공개되면 당해 직업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이후 그 수행이 곤란하게 될 것으로 해석된다.

어떤 비밀이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으로 바로 증언 거절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 중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비밀에 대해서만 증언 거절이 인정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비밀의 공표에 의해 발생할 불이익과 증언 거부에 의해 희생되는 진실 발견 및 재판의 공정성과의 비교형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보도관계자의 취재원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함부로 공개되면 보도관계자와 취재원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장차 계속되어야 할 자유롭고 원활한 취재활동이 방해되고 보도기관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이후 그 수행이 곤란할 것으로 해석된다. 취재원의 비밀은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취재원의 비밀이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도의 내용, 성질, 그것이 갖는 사회

적인 의의·가치, 취재의 양태(樣態), 장차 동종의 취재활동이 방해를 받음으로서 발생할 불이익의 내용, 정도 등과 당해 민사사건의 내용, 성질, 그것이 갖는 사회적인 의의·가치, 증언을 필요로 하는 정도, 대체증거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만 한다.

비교형량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보도기관의 보도는,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국정에 관여하는 국민에게 중요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상을 표명하는 자유와 함께, 사실 보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1조의 보장 하에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보도기관의 보도가 공정한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도의 자유와 함께 보도를 위한 취재의 자유도 헌법 21조의 정신에 비추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취재의 자유가 갖는 위에서와 같은 의의에 비추어볼 때 취재원의 비밀은 취재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취재수단과 방법이 일반의 형벌 법령에 저촉된다든가, 취재원이 된 자가 취재원의 비밀의 공개를 승낙하는 등의 사정이 없이, 더구나 당해 민사사건이 사회적 의의나 영향이 있는 중대한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취재원의 비밀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야 할 필요성이 높고, 그것 때문에 증언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재원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해석

야 할 것이며, 증인은 원칙적으로 취재원과 관련 있는 증언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신문협회보』, 2006년 10월 10일자, 10월 24일자) □

BBC, 프로그램 제작자들을 위해 온라인 법률 수업 시행

BBC 저널리즘 대학은 기업의 모든 프로그램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트레이닝의 일환으로 온라인 법률 수업을 시행한다.

‘온라인 법률’이란 트레이닝 과정은 미디어 법률을 중심으로 모든 BBC의 프로그램 제작자들과 프로듀서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상호작용 프로그램이다.

BBC 저널리즘 대학의 교장 빈 레이는 “우리는 BBC 내의 법률 트레이닝을 개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조사 결과 다른 어떤 형태의 트레이닝보다도 법률에 대한 트레이닝을 원하는 직원들이 많았다. 온라인 법률 트레이닝 코스의 핵심은 직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들이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법률 트레이닝의 첫 단계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이며 내년부터는 두 번째 단계로 저작권과 계약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

BBC 5 Live의 니키 캠벨이 온라인 법률 트레이닝 과정을 지도하며 이 과정의 수강자들은 ‘신중하게 설계된 시나리오’를 통해 수업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BBC의 기자들은 첫 번째 온라인 코스를 6개월 이내에 끝낼 것으로 예상되며 총 3시간 정도 분량

의 코스를 부분적으로 나눠서 회사 컴퓨터를 통해 수업을 받게 된다.

(Press Gazette 2006년 9월 8일자) □

정보원 밝혀내기 위해 통화기록조사 인정, 취재원 보호에는 큰 타격

- 뉴욕 미연방고등법원 판결 -

미국의 뉴욕타임즈 지가 미 당국에 의한 이슬람계 단체의 수색정보를 사전에 입수, 수색 전에 보도한데 대해 뉴욕 미 연방 고법은 지난 8월 1일 1심 판결을 번복, 정보원을 밝혀내기 위해 정부가 동 신문의 두 기자의 통화기록을 조사해도 좋다는 판결을 언도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기자의 한 사람은 미 중앙정보국(CIA) 공작원 명 누설 사건에서 취재원을 지키기 위해 대배심 증언을 일시 거부하여 형무소에 수감된 주디스 밀러 전 기자로 밝혀졌다. 이번 고법의 판단은 정보원 보호를 전제로 하는 보도 기관에 새로운 타격이 되고 있다.

미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밀러와 그의 동료기자는 2001년 미 당국이 이슬람계 자선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수색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수색 전에 단체 측에 전화 취재하여 이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피츠제럴드 특별검사는, 전화취재는 수색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수사에 나서 정보원을 공개하도록 요구했으며, 동 신문은 이를 거부, 통화기록이 정부의 요구에 의해 공개되지 않도록 법원에 소를 제기했었다.

(『신문협회보』, 2006년 8월 8일자, 9월 26일자) □